진월 더리브 라포레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2.21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666-0500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광주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02.21. 이전부터 계속 거주)	광주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라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02.21.(금)	25.03.04.(화)	25.03.05.(수)	25.03.06.(목)	25.03.12.(수)	25.03.13.(목)~ 25.03.23.(일)	25.03.24.(월)~ 25.03.26.(수)

1 공통 유의사항

■ 진월 더리브 라포레 대표번호(☎1666-0500)등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드릴 예정이나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는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의 경우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확인하고, 주민등록표등ㆍ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관련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해당사항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2.18.**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진월-더리브라포레.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 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2.21.(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주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 (2024.02.21.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5.03.04.(화)	25.03.05.(수)	25.03.06.(목)	25.03.12.(수)	25.03.13.(목)~ 25.03.23.(일)	25.03.24.(월)~ 25.03.26.(수)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753, 3층)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광주광역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6개월**	**6개월**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과 - 4614호(2025.02.2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산3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4~20층 9개동 총 300세대 중 일반분양 111세대
[특별공급 42세대(기관추천 7세대, 다자녀가구 12세대, 신혼부부 13세대, 노부모부양 4세대, 생애최초 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025	01	084.8566A	84A	84.8566	30.9774	115.8340	59.5055	175.3395	53.0702	30	3	3	5	1	2	14	16	5
	02	084.9777B	84B	84.9777	30.7140	115.6917	59.5905	175.2822	53.1460	18	2	2	3	1	2	10	8	1
	03	084.9703C	84C	84.9703	31.2214	116.1917	59.5853	175.7770	53.1414	14	1	1	3	-	1	6	8	-
	04	084.9805D	84D	84.9805	31.5081	116.4886	59.5924	176.0810	53.1477	9	1	1	2	-	1	5	4	1
	05	115.9641	115	115.9641	28.0129	143.9770	81.3196	225.2966	72.5252	8	-	1	-	1	-	2	6	2
	06	126.7672	126	126.7672	26.8510	153.6182	88.8953	242.5135	79.2816	32	-	4	-	1	-	5	27	2
	합 계									**111**	**7**	**12**	**13**	**4**	**6**	**42**	**69**	**11**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주차장,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택공급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의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대표번호(☎1666-0500)** 문의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모집공고문상 표시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기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방지에 유의하시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전용면적 기준)	084.8566A	084.9777B	084.9703C	084.9805D	115.9641	126.7672
약식표기	**84A**	**84B**	**84C**	**84D**	**115**	**126**

■ 공급금액 표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동	호	층구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30% (입주 시)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2025-06-30	2025-10-31	2026-02-27	2026-10-30	2027-01-29	2027-04-30	
84A	101동 102동	1호, 2호	1층	2	284,175,000	361,825,000	-	646,0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193,800,000
			3층	2	290,334,000	369,666,000	-	660,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198,000,000
			6~9층	5	302,651,000	385,349,000	-	688,000,000	68,800,000	68,800,000	68,800,000	68,800,000	68,800,000	68,800,000	68,800,000	206,400,000
			10~14층	6	308,810,000	393,190,000	-	702,000,000	70,200,000	70,200,000	70,200,000	70,200,000	70,200,000	70,200,000	70,200,000	210,600,000
	103동	1호, 2호	1층	1	281,536,000	358,464,000	-	640,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192,000,000
			5~9층	3	300,012,000	381,988,000	-	682,0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204,600,000
			10~14층	3	305,731,000	389,269,000	-	695,000,000	69,500,000	69,500,000	69,500,000	69,500,000	69,500,000	69,500,000	69,500,000	208,500,000
	105동	1호, 2호	2~3층	2	290,334,000	369,666,000	-	660,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198,000,000
			12층 (최상)	2	340,043,000	432,957,000	-	773,000,000	77,300,000	77,300,000	77,300,000	77,300,000	77,300,000	77,300,000	77,300,000	231,900,000
	106동	1호, 2호	2~3층	2	290,334,000	369,666,000	-	660,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198,000,000
			6층	1	302,651,000	385,349,000	-	688,000,000	68,800,000	68,800,000	68,800,000	68,800,000	68,800,000	68,800,000	68,800,000	206,400,000
			10층 (최상)	1	340,043,000	432,957,000	-	773,000,000	77,300,000	77,300,000	77,300,000	77,300,000	77,300,000	77,300,000	77,300,000	231,900,000
84B	101동	3호	2~3층	2	277,577,000	353,423,000	-	631,00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189,300,000
			6~7층	2	289,454,000	368,546,000	-	658,0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197,400,000
			12층	1	295,173,000	375,827,000	-	671,0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201,300,000
	107동	1호, 2호	5~7층	3	289,454,000	368,546,000	-	658,0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197,400,000
			12~19층	10	295,173,000	375,827,000	-	671,0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201,300,000
84C	101동	4호	3층	1	281,976,000	359,024,000	-	641,0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192,300,000
			4층	1	288,135,000	366,865,000	-	655,0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196,500,000
			5층	1	294,293,000	374,707,000	-	669,00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200,700,000
			10~14층	3	300,012,000	381,988,000	-	682,0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204,600,000
	102동	3호, 4호	2~3층	3	285,055,000	362,945,000	-	648,0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194,400,000
			4층	1	291,214,000	370,786,000	-	662,000,000	66,200,000	66,200,000	66,200,000	66,200,000	66,200,000	66,200,000	66,200,000	198,600,000
			6~7층	2	296,933,000	378,067,000	-	675,0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202,500,000
			10~14층	2	303,091,000	385,909,000	-	689,0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206,700,000
84D	108동	1호	2층	1	289,014,000	367,986,000	-	657,0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197,100,000
			4층	1	295,173,000	375,827,000	-	671,0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201,300,000
			5~9층	2	301,332,000	383,668,000	-	685,000,000	68,500,000	68,500,000	68,500,000	68,500,000	68,500,000	68,500,000	68,500,000	205,500,000
			15~17층	2	307,490,000	391,510,000	-	699,0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209,700,000
		2호	11~12층	2	307,490,000	391,510,000	-	699,0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209,700,000

			14층 (최상)	1	338,283,000	430,717,000	-	769,0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230,700,000
115	109동	1호, 2호	1층	2	359,530,000	457,700,000	45,770,000	863,0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258,900,000
			2층	2	367,020,000	467,254,545	46,725,455	881,000,000	88,100,000	88,100,000	88,100,000	88,100,000	88,100,000	88,100,000	88,100,000	264,300,000
			3층	2	374,520,000	476,800,000	47,680,000	899,0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269,700,000
			4층 (최상)	2	393,270,000	500,663,636	50,066,364	944,000,000	94,400,000	94,400,000	94,400,000	94,400,000	94,400,000	94,400,000	94,400,000	283,200,000
126	104동	1호, 2호	1층	2	392,020,000	499,072,727	49,907,273	941,000,000	94,100,000	94,100,000	94,100,000	94,100,000	94,100,000	94,100,000	94,100,000	282,300,000
			2~3층	4	400,350,000	509,681,818	50,968,182	961,000,000	96,100,000	96,100,000	96,100,000	96,100,000	96,100,000	96,100,000	96,100,000	288,300,000
			4층	2	409,100,000	520,818,182	52,081,818	982,000,000	98,200,000	98,200,000	98,200,000	98,200,000	98,200,000	98,200,000	98,200,000	294,600,000
			5~9층	10	417,430,000	531,427,273	53,142,727	1,002,000,000	100,200,000	100,200,000	100,200,000	100,200,000	100,200,000	100,200,000	100,200,000	300,600,000
			10~16층	14	426,180,000	542,563,636	54,256,364	1,023,000,000	102,300,000	102,300,000	102,300,000	102,300,000	102,300,000	102,300,000	102,300,000	306,900,000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A	84B	84C	84D	115	126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	1	-	-	-	**2**
	장기복무 제대군인	1	-	-	1	-	-	**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	-	-	-	-	**1**
	장애인	-	1	-	-	-	-	**1**
	중소기업 근로자	-	1	-	-	-	-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	2	1	1	1	4	**12**
신혼부부 특별공급		5	3	3	2	-	-	**1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1	-	-	1	1	**4**
생애최초 특별공급		2	2	1	1	-	-	**6**
합 계		**14**	**10**	**6**	**5**	**2**	**5**	**4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통 유의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급액은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을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 확장 비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합산되어 산정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본 아파트 계약체결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는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본 아파트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실제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는 126타입의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84A, 84B, 84C, 84D, 115타입의 주택형은 견본주택 미건립 또는 이형모형 등 전시하고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체결 시 분양안내문 및 설계 도서 등에 표기된 타입별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주거전용면적 및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 공용 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주택법」및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공급면적 및 대지의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주택가격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 안내할 예정)
-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 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예정)
-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 부과)
- 계약자는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미신청, 대출비율 축소, 대출 불가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정해진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잔여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에 의거 입주개시 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청약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이 일반조항에 의거 해약 조치됩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특별공급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공급기준</td><td>■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td></tr>
<tr><td>청약통장
자격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td></tr>
</table>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광주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라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7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광주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광주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제3항)

※ 이혼 및 재혼 자녀의 경우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광주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광주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라남도 거주자)**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지역(광주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13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
<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1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
<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
(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
<tr><td>3단계</td><td>우선공급
(35%)</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
<tr><td>4단계</td><td>일반공급
(15%)</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
<tr><td>5단계</td><td>추첨공급</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광주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table>
<tr><th>순위</th><th>내용</th></tr>
<tr><td>1순위</td><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tr>
<tr><td>2순위</td><td>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td></tr>
</table>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광주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광주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라남도 거주자)</td></tr>
<tr><td>비고</td><td>■ 자녀기준</td></tr>
</table>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2.21.(금)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5,301,251원	12,421,793원~ 16,562,389원	13,367,64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광주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광주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라남도 거주자)**

■ **②가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6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단독세대’란, 단독 세대주 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본 주택은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인 분은 생애최초 청약신청 불가함)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 colspan="2">내용</th></tr>
<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15%)</td><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
(5%)</td><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td>3단계</td><td>우선공급
(35%)</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4단계</td><td>일반공급
(15%)</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td rowspan="2">5단계</td><td rowspan="2">추첨공급</td><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r><td>1인 가구</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td></tr>
</table>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광주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광주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라남도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2.21.(금)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격요건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광주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라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광주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광주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라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table>
<tr><th colspan="3">필요서류</th></tr>
<tr><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td></tr>
<tr><th>인감증명 방식</th><th>본인서명확인 방식</th></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3.12.(수) ~ 2025.03.21(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3.12.(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간	서류제출 장소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2025.03.13.(목)** ~ **2025.03.23.(일)** 10:00~16:00까지	진월 더리브 라포레 견본주택 **광주광역시 남구 서남대로 735, 3층**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2항 및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격검증서류는 홈페이지**(https://진월-더리브라포레.kr)** 안내 예정이며, 서류제출 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중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분리세대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자산보유 등의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 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호수 배정 추첨참여 및 계약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제출시「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용도 : 당첨자 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이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인 경우 생략 가능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이하 같음)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지역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청약한 경우(복무기간 명시)
해외근로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 ② 반드시 제출) :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 제외),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를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출입국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제출대상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국내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확인	-	• 견본주택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내역을 포함하여 발급/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당첨자의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직계비속	•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당첨자의 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등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국내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에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분리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분리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확인서(본 모집공고 자산보유기준 참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직계존속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
		○		피부양 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주민등록번호'전체표시'(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직계비속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확인	-	• 견본주택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내역을 포함하여 발급/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 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당첨자의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당첨자의 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등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1년이상의주소변동사항,세대주및세대주와의관계를포함하여'전체포함'으로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에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분리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세대원	제출 (분리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확인서(본 모집공고 자산보유기준 참고)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당첨자	• 본인발급용(용도 : 당첨자 자격확인 위임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인감도장	당첨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위임장	당첨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존비속포함)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본인 이외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함.(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득 증빙서류(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계속적인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전년도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 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 전, 후의 급여신청서(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상기 방식 역시 불가하다면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계산하여 추정)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①, ② 해당직장
	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②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①,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의 최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재무제표 및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프리랜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 ② 해당직장/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상기 서류가 없는 금년도 신규 취업의 경우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과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 필수 제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 견본주택에 비치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필수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① 접수장소(견본주택) ② 세무서

※ 상기 소득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 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소득입증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해당자격		소득세 납부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① 해당직장 ② 건강보험공단 ③ 세무서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①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③ 세무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또는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 ②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한함)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①,② 세무서 ③,④ 해당 직장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출산휴가, 휴직했던 분은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직인날인)해야 하며, 사본 및 FAX 수신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자산 입증서류(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로 재산세 내역 발급) ②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③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④ 공동(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주택 등)인 경우] ⑥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 서울특별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 시가표준액조회' 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서울특별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 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 위택스(www.wetax.go.kr) ②, ③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정부24 (www.iros.go.kr / www.gov.kr) ④, ⑤ 행정복지센터 ⑥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추가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 발급 > '부동산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로 재산세 내역 발급) * 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과세증명서 ※ 전국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출력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정부24 (www.gov.kr)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일반공급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발급용(용도: 당첨자 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이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되어있는 경우(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참고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직계존속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제외
		○		피부양 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직계비속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만30세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지역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청약한 경우(복무기간 명시)
해외근로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②반드시 제출) :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목적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를 확인

				세대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제출 대상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발급 > 청약통장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하는 주택명 선택 ※ (청약통장가입은행) 창구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청약홈 > 청약 소통방 > APT당첨 사실 조회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기간포함),세대주 및세대주와의관계포함하여"상세"로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당첨자	• 본인발급용(용도 : 당첨자 자격확인 위임용) (단,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시제3자대리신청불가)
	○		인감도장	당첨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위임장	당첨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당첨자 본인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존비속포함)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분양사무소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또한,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 상기서류 이외의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

※ 유주택자로 보는 경우(예시)

①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② 일부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복합용도 건물을 소유한 경우
③ 분양주택(LH, 지방공사 등)으로써 사업주체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있으나 사실상의 소유자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거나 하고 있는 경우
④ 무허가 건물이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경우
⑤ 별장으로 과세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였으나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 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⑥ 매입임대사업자가 사업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정당당첨자가 정당계약을 하거나,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해당 단지의 잔여세대를 추가 계약한 경우
⑧「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주택의 순위 내 청약에서 공급 가구 수보다 많은 청약자가 신청해 경쟁이 발생한 주택유형(타입)을 계약한 경우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특별공급/일반공급)	**2025.03.24.(월) ~ 2025.03.26.(수)** **(3일간, 10:00 ~ 16:00)**	진월 더리브 라포레 견본주택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735, 3층**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수입인지(인지세)	본인	• 수입인지 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 <수입인지 구입처>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당첨자	• 본인발급용(용도 : 계약 위임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불가)
	○		인감도장	당첨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위임장	당첨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존비속 포함)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2020.10.27. 개정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계약체결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과세 대상으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시점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각각 10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 시, 분양계약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PC 및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금액 안내 : 인지세법 제3조 1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전북은행	1013-01-5208026	한국자산신탁㈜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101동 101호 홍길동 : 101101홍길동 기재) 입금증은 계약 시 제출 (견본주택 수납 불가)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업시행사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계약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수입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이자후불제]

- 총 분양대금 중 중도금 납부금액의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은행에서 중도금대출시 이자후불 조건으로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이자 및 보증수수료는 대출개시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최조 입주개시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며, 최초 입주개시일로부터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단 계약자는 시행위탁자가 대납한 대출이자 및 보증수수료를 입주지정 기간 내 입주시점까지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본 주택은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 한도초과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또는"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1조 제3항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지정 개시일 전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은 별도통보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7년 10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부대 · 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휘트니스센터, 물놀이터 등]
※ 부대 및 복리시설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상기 계획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9 발코니 확장 선택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 시	입주지정일	
84A	42,000,000	4,200,000	37,800,000	
84B	42,000,000	4,200,000	37,800,000	
84C	42,000,000	4,200,000	37,800,000	
84D	42,000,000	4,200,000	37,800,000	
115	52,000,000	5,200,000	46,800,000	
126	56,000,000	5,600,000	50,400,000	

2)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전북은행	1013-01-5207837	한국자산신탁(주)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101홍길동'으로 기재)
-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관련 내용 및 유의사항을 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발코니 확장 등) 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별도로 통지하는 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통지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에 정하는 조건에 따라 일체의 계약변경(신규계약 체결 및 해지(해제)) 불가능하며, 분양권 전매 시 전매수인은 기존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승계 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 시 세대 내 발코니 확장 시 서비스 제공 품목은 제공 및 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저해, 우천으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인접 세대 상·하 및 좌·우 세대 등의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은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상이하거나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및 실내 공간 등 일부 구간의 바닥, 벽체, 천장 일부가 돌출, 단차, 높이 및 폭 축소,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내부 공간 축소 등 사용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확장 세대를 시공하였으며, 발코니 확장 미선택 세대는 발코니 확장 선택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배치에 의해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 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코니 설치 가구의 배치, 규격,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단위세대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일부 발코니의 일괄확장을 전제하여 설계하였으며(확장되는 발코니의 위치는 선택불가)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추가 설치되는 단열재는 발코니 비확장 세대 측에 우선하여 설치되나 설계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발코니 확장 세대 측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심히 저하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설계도서를 필히 확인 및 양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계약 또는 계약 취소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부층 세대의 발코니 배수를 위한 배수관이 하부층 세대 천장 속 또는 벽면 등에 설치되거나, 배수를 위한 선홈통이 설치되어 소음, 누수 등의 하자발생 및 미관저해, 벽체 또는 천장돌출, 확장 공간 축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세대는 인접 세대(상·하 및 좌·우 세대 등)의 발코니 확장 미선택 시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해당 세대 내부 바닥, 벽체 및 천장 등에 단열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발코니 및 실내 공간 등 일부 구간의 바닥, 벽체 및 천장의 마감면의 돌출 및 단차 발생, 결로 발생, 천장고 높이 감소, 커튼박스 및 등박스 크기 및 깊이 감소, 설비 설치 불가 등이 발생되거나 발생할 수 있어 사용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 설치된 단열재의 임의 제거 및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확장부분의 외부창호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향후 구조검토 등에 의해 창호 및 도어사양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 벽체, 천장 환기구, 에어컨 매립배관, 배선기구, 조명기구 위치 등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내·외부 온도차 또는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또는 결빙 발생 및 그에 따른 마감손상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 세대는 인접 세대(상·하 및 좌·우 세대 등)의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해당 세대 내부 바닥, 벽체 및 천장 등에 단열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발코니 및 실내 공간 등 일부 구간의 바닥, 벽체 및 천장의 마감면의 돌출 및 단차 발생, 결로 발생, 천장고 높이 감소, 커튼박스 및 등박스 크기 및 깊이 감소, 설비 설치 불가 등이 발생되거나 발생할 수 있어 사용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설치된 단열재의 임의 제거 및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 시 냉매배관, 드레인,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 시 [일반난간대(철재 투시형)가 설치되며, 발코니 외부 창호는 단창이 설치되며, 난간대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호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 등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 관계법령에 따른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발코니 창호를 설치하여도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에 렌지후드 및 화장실용 휀 덕트가 돌출 또는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 발코니 2개소(115타입 1개소)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 및 수전은 시공하지 않고, 배수구 위치 및 배수/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개인 또는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확장 시(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에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적합하게 시공해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시 관리주체 및 인허가청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개인 또는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 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개인 또는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를 선택한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 부담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의 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분양계약자의 의사에 따른 선택사항으로 분양계약자는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한 후 계약하기로 하며,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변동, 취소 등이 불가하고 사업주체에게 계약해지 또는 대금납부 거부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제5항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발행방법은 개인 이메일 등록자의 경우 등록된 이메일로 미등록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정한 이메일을 사용하시기바랍니다.
- 분양계약자는 주소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자에 대하여 안내문 등을 종전 주소지로 발송하며, 발송 후 15일이 경과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대한 분양계약자의 불이익은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사업주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급계약서, 관계법령,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 사업주체의 분양계약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은 서명 기재 후 입주 시까지(제품 수령 확인 후 폐기)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분양계약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제품의 수령은 불가하며, 주요 개인정보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납부 안내 등에 활용될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최종 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본 계약 및 모집공고문 내용과 유의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과 관련된 분쟁, 다툼 그리고 공사 중 또는 입주 후 민원이나 이의제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추가선택(유상옵션) 품목이며, 미 선택 세대는 기타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10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

※ 추가선택품목 선택 관련 품목별 내용 및 유의사항을 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과 관련된 분쟁, 다툼 그리고 공사 중 또는 입주 후 민원이나 이의제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AT포함]

약식표기	옵션	실내기	공급금액	계약시(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84 A,B,C,D	선택 ①(3대)	거실, 주방, 침실1(안방)	5,300,000	530,000	4,770,000	
	선택 ②(5대)	전실(거실, 주방, 침실1(안방), 침실2, 침실3)	7,800,000	780,000	7,020,000	
115	선택 ①(3대)	거실, 주방, 침실1(안방)	5,500,000	550,000	4,950,000	
	선택 ②(6대)	전실(거실, 주방, 침실1(안방), 침실2, 침실3, 침실4)	9,200,000	920,000	8,280,000	
126	선택 ①(3대)	거실, 주방, 침실1(안방)	5,500,000	550,000	4,950,000	
	선택 ②(6대)	전실(거실, 주방, 침실1(안방), 침실2, 침실3, 침실4)	10,700,000	1,070,000	9,630,000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추가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선택 시에만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가능하고, 발코니 확장 미선택 시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미선택 시 에어컨 냉매배관 2개소(거실, 침실1(안방)) 설치)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유상옵션금액은 유상옵션 미선택 시 적용되는 기본 냉매배관 2개소(거실, 침실1(안방))의 공사비를 차감하고 산정한 금액이며, 시스템 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시 기본 매립 냉매배관 2개소(거실+침실1(안방))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에어컨 개별설치 시 실외기실 공간과 출입문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실외기실의 공간이 협소하므로 별도 확인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택형에 따라 실이 통합되는 경우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개소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시스템에어컨은 [LG전자]제품으로 시공됩니다.(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델과 브랜드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배관 및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유선 리모컨은 설치되지 않으며, 본 공사 시 배관이 노출 시공됩니다.
- 고객 요청에 의한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외기실에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천장마감공사 전 실내기 설치가 선행되는 품목으로, 설치된 제품의 제조년월이 입주시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시장 상황의 변화 등으로 당초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단위 : 원, VAT포함]

품 목	적용 주택형	구성 내용		공급금액	계약시(10%)	잔금(90%)	비 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자동형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84A,84B 84C,126	유상	AL금속프레임(다크그레이) + 브론즈 패턴유리	2,398,000	239,800	2,158,200	126 견본주택 설치
		기본	벽체 설치 + 벽지 마감				
수동형 현관 중문 (여닫이 도어)	84D, 115	유상	AL금속프레임(다크그레이) + 브론즈 패턴유리	1,210,000	121,000	1,089,000	
		기본	-				

※ 중문 추가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현관중문은 주택형별의 구조 및 현관크기에 따라 중문의 개폐타입 및 사이즈, 색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평면자료 및 카달로그 등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은 본 공사 시 동급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면 특성상 84D, 115타입은 자동형 현관 중문 설치가 불가하며, 수동형 여닫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벽과 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의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특성상 개폐 시 벽체에서 돌출되며, 돌출 사이즈는 타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선택 시 주택형에 따라 디딤판의 크기, 디자인, 위치는 미선택 시와 상이할 수 있으며, 현관 디딤판과 마루 사이에 재료분리대가 설치됩니다.
- 현관중문 선택 시 주택형에 따라 벽체의 길이 또는 가구의 크기, 디테일, 디자인, 위치는 미선택 시와 상이할 수 있으며, 현관장의 길이와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동형 여닫이 도어는 댐핑 기능이 없어, 물리적인 충격에 파손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추가선택품목 미 선택 시 견본주택과 마감재질 및 디테일이 상이하게 시공됩니다.

■ 거실 스타일업 (고급화)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적용 주택형	구성 내용		공급금액	계약시(10%)	잔금(90%)	비 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고급화 (거실 조명 및 마감재)	84A (기준층, 최상층)	유상	에디톤(거실+주방+복도 바닥) + 디자인판넬(복도) + 원형 디자인 매입조명(복도) + 거실 라인조명(□자 직/간접, 디밍(밝기조절)+ 아트월타일600X1200	6,732,000	673,200	6,058,800	
		기본	강마루(거실/주방/복도 바닥) + 실크벽지 + 기본형 매입조명(복도) + 거실 사각 직부조명(디밍불가) + 아트월타일600X600				
	84B (기준층, 최상층)	유상	에디톤(거실+주방+복도 바닥) + 디자인판넬(복도) + 원형 디자인 매입조명(복도) + 거실 라인조명(□자 직/간접, 디밍(밝기조절) + 아트월타일600X1200	7,557,000	755,700	6,801,300	
		기본	강마루(거실/주방/복도 바닥) + 실크벽지 + 기본형 매입조명(복도) + 거실 사각 직부조명(디밍 불가) + 아트월타일600X600				
	84C (기준층, 최상층)	유상	에디톤(거실+주방+복도 바닥) + 디자인판넬(복도) + 원형 디자인 매입조명(복도) + 거실 라인조명(□자 직/간접, 디밍(밝기조절) + 아트월타일600X1200	7,546,000	754,600	6,791,400	
		기본	강마루(거실/주방/복도 바닥) + 실크벽지 + 기본형				

			매입조명(복도) + 거실 사각 직부조명(디밍 불가) + 아트월타일600X600				
	84D (기준층, 최상층)	유상	에디톤(거실+주방+복도 바닥) + 디자인 판넬(복도) + 원형 디자인 매입조명(복도) + 거실 라인조명 (□자 직/간접, 디밍(밝기조절)+ 아트월타일600X1200	7,766,000	776,600	6,989,400	
		기본	강마루(거실/주방/복도 바닥) + 실크벽지 + 기본형 매입조명(복도) + 거실 사각 직부조명(디밍불가) + 아트월타일600X600				
	115 (기준층, 최상층)	유상	에디톤(거실+주방+복도 바닥) + 디자인 판넬(복도) + 원형 디자인 매입조명(복도) + 거실 라인조명 (□자 직/간접, 디밍(밝기조절) + 아트월타일600X1200	8,547,000	854,700	7,692,300	
		기본	강마루(거실/주방/복도 바닥) + 실크벽지 + 기본형 매입조명(복도) + 거실 사각 직부조명(디밍 불가) + 아트월타일600X600				
	126 (기준층)	유상	에디톤(거실+주방+복도 바닥) + 디자인 판넬(복도) + 원형 디자인 매입조명(복도) + 거실 라인조명(□자 직/간접, 디밍(밝기조절) + 아트월타일600X1200 + 아트월타일 연장시공(복도) + 유리장식장(팬트리2 수납축소 포함)	10,483,000	1,048,300	9,434,700	-견본주택 설치 -유리장식장 설치
		기본	강마루(거실+주방+복도 바닥) + 실크벽지 + 기본형 매입조명(복도) + 거실 사각 직부조명(디밍 불가) + 아트월타일600X600 + 팬트리2				
	126 (최상층)	유상	에디톤(거실+주방+복도 바닥) + 디자인 판넬(복도) + 원형 디자인 매입조명(복도) + 거실 라인조명(□자 직/간접, 디밍(밝기조절) + 아트월타일600X1200 + 아트월타일 연장시공(복도)	9,262,000	926,200	8,335,800	-최상층 다락 계단 설치로 팬트리, 수납공간 축소 및 장식장 미적용 -최상층 계단 하부 팬트리 시스템가구 미설치
		기본	강마루(거실+주방+복도 바닥) + 실크벽지 + 기본형 매입조명(복도) + 거실 사각 직부조명(디밍불가) + 아트월타일600X600 + 가구도어(계단하부 수납공간)				-최상층 다락 계단 설치로 팬트리 수납공간 축소, 시스템가구 미설치

※ 거실 스타일업 관련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주택형별의 구조에 따라 설치범위, 사이즈, 색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평면자료, 카달로그 등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은 동급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디자인, 디테일, 패턴, 나누기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거실 스타일업 품목은 인테리어 통합 패키지 옵션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바닥(에디톤)에 물기 등이 묻어있을 경우 미끄러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품 및 이음새 등의 오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에디톤은 친환경 스톤플로링으로 일반 바닥타일과 특성이 상이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아트월 타일은 600X1200 사이즈이며, 126타입만 복도에 연장 시공되며 그 외 타입은 연장 설치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조명기기의 이음매가 노출될 수 있으며, 조명기기의 측면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거실 네트워크 스위치를 통해 디밍(밝기 조절)이 가능하며, 미선택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거실은 색온도 및 밝기조절이 가능한 등기구로 설치되며, 색온도 및 밝기조절은 거실 주등에서는 거실 네트워크 스위치을 통해 밝기 조절(디밍) 이 가능하며, 그 외 디테일, 하드웨어 등의 사양은 동급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미 선택 시 설치되는 기본 강마루, 거실 아트월 포세린타일(600X600), 거실복도 벽지마감 등으로 시공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안내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미 선택 시 126타입은 복도 유리장식장이 설치되지 않으며, 팬트리2의 사이즈가 확장되어 설치됩니다.
- 거실 및 우물천장 길이에 따라 옵션형 조명의 길이 및 이음매의 위치가 타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조명기기의 기본 램프 색온도는 옵션여부와 상관없이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침실)기준 색온도로 설치됩니다.
- 다른 추가선택품목(현관, 주방 등) 중복 선택 여부에 따라 본 공사 시 마감 간섭 부위의 재질 및 디테일 등이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됩니다.
- 최상층 세대는 최상층 다락 계단 설치에 따른 수납공간이 축소될 수 있으며, 수납의 양 및 마감, 자재의 디테일이 기준층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계단 하부 팬트리2(창고)에는 가구도어만 설치되며, 시스템가구가 미설치 됩니다.
- 84B타입 최상층 세대의 경우 최상층 다락 계단 설치에 따라 침실2 드레스룸 공간이 축소 시공되어 사용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시스템 선반이 미설치 됩니다.

■ 주방 스타일업 (마감특화)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적용 주택형	내용		공급금액	계약시(10%)	잔금(90%)	비 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주방 스타일업 (마감특화)	84A	유상	유리 플랩 상부장(내부조명) + 상부장 하부조명 + 디자인 판넬(주방) + 아일랜드 하부장(매립 콘센트) + 엔지니어드스톤(벽,상판,아일랜드) + 대형 사각싱크볼 + 우물천장(흡음판넬) + 디자인 조명(식탁, 아일랜드) + 주방 대형라인조명 + 3구 인덕션 쿡탑	12,969,000	1,296,900	11,672,100	
		기본	여닫이 상부장 + 벽지 마감 + 타일(벽:300x600) + MMA(상판) + 일반 언더싱크볼 + 기본 조명 + 3구 가스 쿡탑				
	84B	유상	유리 플랩 상부장(내부조명) + 상부장 하부조명 + 아일랜드 하부장(매립 콘센트) + 엔지니어드스톤(벽,상판,아일랜드) + 대형 사각싱크볼 + 우물천장(흡음판넬) + 디자인 조명(식탁, 아일랜드) + 주방 대형라인조명 + 3구 인덕션 쿡탑	8,943,000	894,300	8,048,700	
		기본	여닫이 상부장 + 벽지 마감 + 타일(벽:300x600) + MMA(상판) + 일반 언더싱크볼 + 기본 조명 + 3구 가스 쿡탑				
	84C	유상	유리 플랩 상부장(내부조명) + 상부장 하부조명 + 디자인 판넬(주방) + 아일랜드 하부장(매립 콘센트) + 엔지니어드스톤(벽,상판,아일랜드) + 대형 사각싱크볼 +우물천장(흡음판넬) + 디자인 조명(식탁, 아일랜드) + 주방 대형라인조명 + 3구 인덕션 쿡탑	9,427,000	942,700	8,484,300	
		기본	여닫이 상부장 + 벽지 마감 + 타일(벽:300x600) + MMA(상판) + 일반 언더싱크볼 + 기본 조명 + 3구 가스 쿡탑				
	84D	유상	유리 플랩 상부장(내부조명) + 상부장 하부조명 + 디자인 판넬(주방) + 아일랜드 하부장(매립 콘센트) + 엔지니어드스톤(벽,상판,아일랜드) + 대형 사각싱크볼 + 우물천장(흡음판넬) + 디자인 조명(식탁, 아일랜드) + 주방 대형라인조명 + 3구 인덕션 쿡탑	9,460,000	946,000	8,514,000	

		기본	여닫이 상부장 + 벽지 마감 + 타일(벽:300x600) + MMA(상판) + 일반 언더싱크볼 + 기본 조명 + 3구 가스 쿡탑				
	115	유상	유리 플랩 상부장(내부조명) + 상부장 하부조명 + 디자인 판넬(주방) + 아일랜드 하부장(매립 콘센트) + 엔지니어드스톤(벽,상판,아일랜드) + 대형 사각싱크볼 + 우물천장(흡음판넬) + 주방 대형라인조명+ 디자인 조명(식탁, 아일랜드) + 3구 인덕션 쿡탑	14,146,000	1,414,600	12,731,400	
		기본	여닫이 상부장 + 벽지 마감 + 타일(벽:300x600) + MMA(상판) + 일반 언더싱크볼 + 기본 조명 + 3구 가스 쿡탑				
	126	유상	유리 플랩 상부장(내부조명) + 상부장 하부조명 + 디자인 판넬(주방) + 대형 아일랜드 하부장(매립 콘센트) + 엔지니어드스톤(벽,상판,아일랜드) + 대형 사각싱크볼 +우물천장(흡음판넬) + 디자인 조명(식탁, 아일랜드) + 주방 대형라인조명 + 3구 인덕션 쿡탑	15,081,000	1,508,100	13,572,900	
		기본	여닫이 상부장 + 벽지 마감 + 타일(벽:300x600) + MMA(상판) + 일반 언더싱크볼 +기본 조명 + 3구 가스 쿡탑				

※ 주방 마감재 추가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주택형별의 구조에 따라 설치범위, 사이즈, 색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평면자료, 카달로그 등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은 동급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디자인, 디테일, 패턴, 나누기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방 스타일업 마감 특화 품목은 인테리어 통합 패키지 옵션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주방 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별도의 물턱이 없으므로 사용시 물의 흘러내림 또는 물 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주방 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 시 연결부위 발생(세대별로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및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재의 특성상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미 선택 시 설치되는 기본 MMA(인조석) 주방 상판, 도기질(300X600) 벽타일, 주방/복도 벽지마감, 상부장 재질, 주방 일반 싱크볼 외 기본 액세서리 등으로 시공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안내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미 선택 시 아일랜드장 일체가 설치되지 않아, 가전 소물장, 주방 서랍장의 설치위치 및 사이즈가 변경되며, 가구ACC(매립 콘센트 등)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디자인에 따라 상부장 일부만 설치되어 수납양이 축소설치 되오니, 계약 전 평면 이미지 및 카달로그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의 식탁 가구 배치 시 아일랜드 하부장으로 인해 일부 타입의 경우 식탁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조명기구의 개별 위치 변경은 불가하며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전제품 품목은 선택에 따라 미설치되는 기본제공 가전, 가구 등의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제품 성능 개선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제품 사양 변경 시 모델명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명기기의 기본 램프 색온도는 옵션여부와 상관없이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침실)기준 색온도로 설치됩니다.
- 다른 추가선택품목(거실, 주방가전 등) 중복 선택 여부에 따라 본 공사 시 마감 간섭 부위의 재질 및 디테일 등이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됩니다.
- 주방키친핏 스타일(가전) 옵션 선택에 따라 주방가구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 – 쿡탑]

- 빌트인 가전제품의 경우 설치 전 수도, 전기, 등 공급을 위한 매립호스가 설치되며, 이에 대한 시공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추가유상옵션 미선택 시 3구 가스 쿡탑이 설치됩니다.

■ **주방 키친핏 스타일**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적용 주택형	내용		공급금액	계약시(10%)	잔금(90%)	비 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주방 키친핏 스타일	84A	유상	냉장고장 + [LG전자] 1도어 키친핏 냉장고 (X321MB3S) + 1도어 키친핏 냉동고 (Y321MB3S) + 1도어 키친핏 김치냉장고 (Z321MB3CS)	4,224,000	422,400	3,801,600	- 냉장고 색상 : 블랙, 메탈
		기본	냉장고 설치공간				냉장고설치공간 후면 벽지 마감
	84B	유상	냉장고장 + 키큰 수납장(인출 ACC/ 내부 조명) + [LG전자] 1도어 키친핏 냉장고 (X321MB3S) + 1도어 키친핏 냉동고 (Y321MB3S) + 1도어 키친핏 김치냉장고 (Z321MB3CS)	4,554,000	455,400	4,098,600	- 냉장고 색상 : 블랙, 메탈
		기본	냉장고 설치공간				냉장고설치공간 후면 벽지 마감
	84C	유상	냉장고장 + [LG전자] 1도어 키친핏 냉장고 (X321MB3S) + 1도어 키친핏 냉동고 (Y321MB3S) + 1도어 키친핏 김치냉장고 (Z321MB3CS)	4,191,000	419,100	3,771,900	- 냉장고 색상 : 블랙, 메탈
		기본	냉장고 설치공간				냉장고설치공간 후면 벽지 마감
	84D	유상	냉장고장 + 키큰 수납장(인출 ACC/ 내부 조명) + [LG전자] 1도어 키친핏 냉장고 (X321MB3S) + 1도어 키친핏 냉동고 (Y321MB3S) + 1도어 키친핏 김치냉장고 (Z321MB3CS)	4,466,000	446,600	4,019,400	- 냉장고 색상 : 블랙, 메탈
		기본	냉장고 설치공간 + 키큰장(장식장)				냉장고설치공간 후면 벽지 마감
	115	유상	냉장고 FIX판넬 + 냉장고장 + [LG전자] 1도어 키친핏 냉장고 (X321MB3S) + 1도어 키친핏 냉동고 (Y321MB3S) + 1도어 키친핏 김치냉장고 (Z321MB3CS)	4,114,000	411,400	3,702,600	- 냉장고 색상 : 블랙, 메탈
		기본	냉장고 설치공간				냉장고설치공간 후면 벽지 마감
	126	유상	냉장고장 + 키큰 수납장(인출 ACC/ 내부 조명) + [LG전자] 1도어 키친핏 냉장고 (X321MB3S) + 1도어 키친핏 냉동고 (Y321MB3S) + 1도어 키친핏 김치냉장고 (Z321MB3CS)	4,884,000	488,400	4,395,600	- 냉장고 색상 : 블랙, 메탈
		기본	냉장고 설치공간				냉장고설치공간 후면 벽지 마감

※ 주방 키친핏 스타일(주방가전) 추가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주택형별에 따라 설치되는 가전기기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기기 및 가구 등이 제공되는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키친핏 스타일 품목은 패키지 유상옵션은 인테리어 통합 패키지 옵션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가전제품 품목은 선택에 따라 미설치되는 기본제공 가구 등의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제품 성능 개선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제품 사양 변경 시 모델명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은 제품의 단종, 변경, 성능향상 등 제조사의 사정으로 인해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 품목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 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됩니다.
- 가전제품의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전기기 품목은 주택형별의 구조 및 평면 여건에 따라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제공되는 가전은 타입에 따라 사양, 색상, 도어 개폐 방향, 설치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가전 설치에 따른 주방 가구의 길이가 축소될 수 있으며, 계약 전 평면자료 및 카탈로그 등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LG전자 키친핏 가전제품은 B2B 전용 모델이며, 상기 표기된 바와 같이 주택형별로 맞춤 구성된 세트로만 판매하고 있으므로 상품의 조합 및 설치위치, 모델, 디자인, 색상은 주택형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개별선택 및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빌트인 가전 – 냉장고]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빌트인 냉장고의 문 열림 방향은 동일 주택형 일지라도 평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선택 및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 빌트인 냉장고의 상부장이 견본주택 내 안내와 같이 설치되며, 일반 냉장고 설치 시 냉장고장 보다 돌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추가선택품목(거실, 주방 등) 중복 선택 여부에 따라 본 공사 시 마감 간섭 부위의 재질 및 디테일 등이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됩니다.

■ 드레스룸 스타일업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적용 주택형	내용		공급금액	계약시(10%)	잔금(90%)	비 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드레스룸 스타일업 (드레스룸 도어 + 시스템 가구)	84A	유상	3연동 슬라이딩 도어(수동) + 벽 판넬형 시스템 가구 + 선반 조명 + 다용도 악세사리 걸이 + 천장형 제습기	4,741,000	474,100	4,266,900	
		기본	가구 도어 + 일반형 시스템 선반				
	84B	유상	3연동 슬라이딩 도어(수동) + 벽 판넬형 시스템 가구 + 선반 조명 + 천장형 제습기	5,456,000	545,600	4,910,400	-다용도 악세사리 걸이 미설치
		기본	가구 도어 + 일반형 시스템 선반				
	84C	유상	3연동 슬라이딩 도어(수동) + 벽 판넬형 시스템 가구 + 선반 조명 + 천장형 제습기	3,630,000	363,000	3,267,000	-다용도 악세사리 걸이 미설치
		기본	가구 도어 + 일반형 시스템 선반				
	84D	유상	3연동 슬라이딩 도어(수동) + 벽 판넬형 시스템 가구 + 선반 조명 + 다용도 악세사리 걸이 + 천장형 제습기	3,608,000	360,800	3,247,200	
		기본	가구 도어 + 일반형 시스템 선반				
	115	유상	3연동 슬라이딩 도어(수동) + 벽 판넬형 시스템 가구 + 선반 조명 + 다용도 악세사리 걸이 + 천장형 제습기 + 침실1 알파룸(원슬라이딩 도어)	4,191,000	419,100	3,771,900	-드레스룸 분리 후 침실1 알파룸 조성
		기본	가구 도어 + 일반형 시스템 선반				
	126	유상	3연동 슬라이딩 도어(수동) + 벽 판넬형 시스템 가구 + 선반 조명 + 천장형 제습기	4,664,000	466,400	4,197,600	-다용도 악세사리 걸이 미설치
		기본	가구 도어 + 일반형 시스템 선반				

※ 드레스룸 스타일업 추가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주택형별의 구조에 따라 설치범위, 사이즈, 색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평면자료, 카달로그 등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은 동급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수납성 개선 및 시공상의 이유 등으로 가구의 크기 및 구성, 하드웨어 사양(손잡이, 레일 악세사리 등), 마감 재질 등의 디테일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형별, 타입별 레이아웃에 따라 가구의 길이, 구성, 디자인, 위치는 상이할 수 있으며, 각 타입별 유상옵션 관련 항목을 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드레스룸 스타일업 품목은 인테리어 통합 패키지 옵션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는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파손될 수 있습니다.
- 슬라이딩 도어 특성상 개폐 시 벽체에서 돌출될 수 있으며, 벽과의 틈이 발생될 수 있으며, 돌출 사이즈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미 선택 시 기본형 마감의 강마루, 벽지 및 천장지로 시공되며, 가구 설치 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바닥, 벽,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미 선택 시 기본형 가구 도어와 일반형 시스템 가구가 기본으로 설치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미 선택 시 개구부의 폭이 축소되며 가구도어의 벽체에는 벽지로 시공됩니다.
- 세대 내 드레스룸 콘센트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의류관리기 설치 위치를 예상하여 선정하였으며, 별도 계약자의 가전기기 사용 시 입주 전 콘센트의 위치를 확인바랍니다.

■ 수납강화형 침실 특화 (126타입)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적용 주택형	내용		공급금액	계약시(10%)	잔금(90%)	비 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수납강화형 침실 특화	126	유상	통합형 (침실2 책상/수납장 가구 세트 + 침실3 (3연동 슬라이딩 도어(수동) + 침실 기본 직부 조명) + 침실4 드레스룸(가구 도어 + 일반형 시스템 선반 + 다용도 악세사리 걸이 + 매입조명))	8,426,000	842,600	7,583,400	-침실3 목문 미설치
		기본	분리형 (침실2, 침실3, 침실4 분리: 벽체 + 각 침실 목문 + 각 침실 기본 직부 조명)				

※ 수납강화형 침실 특화 추가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수납강화형 침실 특화 품목은 인테리어 통합 패키지 옵션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가구 및 도어의 손잡이, 하드웨어, 레일, 악세서리 등의 디테일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형별, 타입별 레이아웃에 따라 126타입만 유상옵션 선택이 가능하며, 가구의 길이, 구성, 디자인, 위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등 안내 사항을 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성 개선 및 시공상의 이유로 인해 가구의 크기 및 구성, 하드웨어 사양, 마감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침실3 슬라이딩 도어는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파손될 수 있습니다.
- 슬라이딩 도어 특성상 개폐 시 벽체에서 돌출될 수 있으며, 벽과의 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돌출 사이즈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드레스룸 콘센트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의류관리기 설치 위치를 예상하여 선정하였으며, 별도 계약자의 가전기기 사용 시 입주 전 콘센트의 위치를 확인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미 선택 시 침실은 각각 분리되어 시공되며, 기본형 마감의 강마루, 벽지 및 천장지로 시공되며, 기본 침실 직부 조명이 설치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미 선택 시 각 침실의 콘센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추가선택품목(거실,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등) 중복 선택 여부에 따라 본 공사 시 마감 간섭 부위의 재질 및 디테일 등이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추가선택품목 [선택(6대-전실)] 중복 선택 시 견본주택과 동일한 위치에 침실3에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 선택 관련 내용 및 유의사항을 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과 관련된 분쟁, 다툼 그리고 공사 중 또는 입주 후 민원이나 이의제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 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설치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선택 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금액 및 물품 등 관련 세부사항은 사업주체에서 임의 결정한 금액이며, 분양승인대상(분양가 상한제 비대상)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전체 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추가선택품목 미선택시 적용되는 품목(무상설치형)의 공사비를 차감하고 산정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무상설치형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수분양자에게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금액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과세될 경우 수분양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잔금(9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도 공급계약서에 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패키지는 개별품목의 선택 및 계약이 불가하며, 해당 패키지는 모집공고 내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 경우 수분양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선택품목계약 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하며, 미납시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공동주택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단, 수분양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 할 경우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합니다.)
- 추가선택품목계약은 본 공동주택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공동주택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추가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유상옵션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계약은 본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 또는 전체)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제품 또는 자재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및 시공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의 신제품 출시, 향후 시장 동향, 개발 경과, 성능개선 등에 따라 모델명 및 제원 등의 변경된 경우 입주 시기에 생산되는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공급 및 시공될 수 있음
- 기본제공품목과 추가선택품목은 중복 선택할 수 없으며, 특화 추가선택품목은 인테리어 통합 패키지 옵션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선택 유무에 따라 제공되는 가구의 형태 및 사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기본으로 설치되는 수납공간이 미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일반가구 등의 가구 뒷면 및 바닥, 천장에는 바닥재 및 벽지, 천장지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설계도서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 안내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주택 형별로 형태 및 사이즈, 내부구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분양자 또는 입주자의 하자를 제외한 시공상의 하자는 사업주체가 관련 법령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을 부담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관련한 문의 및 하자보수 요청은 해당 시스템에어컨 제조, 설치 등의 업체로 하시기 바랍니다.
- 가전기기에 관련한 문의 및 하자보수 요청은 해당 가전브랜드의 업체로 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시공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 위치 지정 및 마감재 선택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품목별 일괄시공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템별 신청 불가)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아래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단, 추후(계약전 등)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를 안내할 경우 반드시 해당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계약시 아래 계좌 입금 후 입금증 주택전시관 제출[주택전시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통합옵션 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잔금(9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에 준합니다.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기타품목)	**신한은행**	**100-034-017420**	**에스지씨이앤씨(주)**

11 기타 주요사항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적용여부	적용내용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단열조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환경부장관 고시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설치

12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 등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일반사항	• 계약체결 시 본 유의사항을 확인 및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반드시 본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본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다.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등에 제시된 시험성적서 및 시험성적서에 명기된 업체는 법적인 기준에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기 위한 단순 샘플이며, 실 적용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나 기술로 변경(설계변경 포함)될 수 있고, 적용 부위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다. • 본 공사 시 인허가 협의 결과 또는 현장 공사 여건 등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전용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경미한 설계변경 외의 변경사항은 계약자의 동

구 분	내 용
	의 또는 고지를 진행 후 평면 및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다. • 발코니 확장유무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 등으로 본 공사 시 발코니 실사용 면적 등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구조 및 성능 개선 등을 위해 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용면적 및 서비스면적, 내부구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자의 실제 공급면적(주거공용면적, 계단실면적 등), 계약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지하주차장), 대지지분 및 전용률 등이 변경될 수 있다. • 각종 공용부 면적(계단실,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설비공간 등)은 본 공사시 현장 여건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다. • 본 공동주택은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들의 요청, 입면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 침해가 동·호수별 등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다.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내·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급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다. •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 고지하지 않는다. • 구조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해 향후 구조형식과 구조부재의(기둥, 보 등) 크기, 위치, 개수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층고가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계약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 {세대내. 외 및 공용부분(부대복리시설 포함)의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사업계획승인 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본 사업부지 인근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분양을 진행하거나 완료한 공동주택의 마감사양, 설치된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타 분양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그에 따른 귀책사유가 없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여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등),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 일부세대는 시공 개선 및 품질 관리를 위한 현장 내 공사용 견본(목업)세대로 이용될 수 있다. • 본 공동주택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그에 따른 귀책사유가 없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또는 해당 민원으로 인한 행정관청의 공사중단, 권고 등으로 시공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조정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기관에 대해서는 지체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면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 계약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아야 하며,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계약에 착오 없도록 하여야 한다.(평형 환산 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일부 타입 세대의 전용면적에는 발코니 초과면적이 합산되어 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며, 소수점 5째 자리에서 절사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단수정리 등에 따른 오차면적은 일부 세대에 할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시할 수 없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각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별도 경계구획 및 구분 등이 불가하여 이를 요구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및 준공 시 확정측량,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공동주택 세대의 공용면적(계단실, 부대복리시설, 주차장. 단, 벽체공용면적은 제외)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한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

구 분	내 용
	형별 전용 및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 본 단지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용도별로 배분하였으며, 별도 경계구획 및 구분 등이 불가하여 이를 요구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본 공동주택은 용도별로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의 타 시설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 계획(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추후 설계변경 될 수 있다. • 각 면적 배분은 관련 법령 및 유사 법령의 기준으로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준공 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세대 당 계약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다. • 인허가 조건에 따라 사업부지 내 일부는 차량 진출입 가감속차로 및 경관녹지로 사용 및 기부채납 되어 사업면적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계약사항	• 본 공동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할 수 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및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한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조합),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중도금 대출,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에 의거 해약 조치되며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할 수 없다. •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분양안내, 유의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 계약자가 공급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공급계약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전국일간지에 분실공고를 내고 2주일 후 공증 받은 위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지참하고 견본주택 또는 조합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조합 및 시공사의 소정의 양식에 따른 분실각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관계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할 시에만 공급계약서 재발급이 가능하다.(단, 공급계약서 재발급 방식은 변경될 수 있다.) • 본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사업주체+계약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외국인이 상속·경매 등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 취득세는 납부원인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문의하여야 한다. •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및 사업지 주변현황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및 공법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사업관계자의 협의 및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분양대행사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대행사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관계자의 결정에 따르며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계약 장소 등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관계자와 무관한 사항으로 유의하여야하며, 해당 영업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 「실내 공기질 관리법」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으로 계약자는 해당 기간 내 확인하여야

구 분	내 용
	하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한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관계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관계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다. • 공사 중 일부 세대 또는 부대복리시설 전체 또는 일부는 현장사무실 및 창고, 샘플실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입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 또는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반비용은「동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된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 외(공사도중) 계약자의 현장 및 전체 세대 내 무단출입 및 세대 내부의 임의적인 촬영을 금지하며, 무단 촬영물의 유포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 피해 발생 시 계약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견본주택/홍보물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홍보를 위한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 에 표현된 단위세대 평면 등에 각 실의 규모관련 치수 또는 면적 등은 제작 시에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된다.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생활가구류(침대, 소파, 책상, 의자 등), 생활가전류(소형가전, TV, 밥솥,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간접등 등)는 연출용 전시품이다. 전시품으로 본 공사 시 시공되지 않는다. •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세대의 경우 계약 전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건립세대와 다른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카탈로그 또는 모형 등을 확인 및 숙지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 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 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되며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맞게 설치된다.**(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용 소방시설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외부 조경, 천장에 설치된 전시조명 및 CCTV, 스팟 조명 등은 전시 및 견본주택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는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 되었으며, 전시품목 및 옵션 선택사항 품목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견본주택(사이버 견본주택 포함)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전한 뒤 입주 전 사업관계자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 시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 • 각종 홍보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개발계획 및 각종시설(학교, 도로, 완충녹지, 공원 등)의 조성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다. • 모형 및 카탈로그에 표현된 조감도, 투시도, 평면도, 배치도, 조명, 조경, 시설물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시공 시 구조 등의 안전성 및 입주민의 이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연출용 설비 배관, 배선포함),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각종 인허가 사항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 발코니 확장 및 확장 시 포함품목은 별도 계약사항으로 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한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

구 분		내 용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단지모형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등)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조명, 식재,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옥탑부 디자인, 주동/창호형태, 벽체마감, 디테일 등은 실제 각종 인허가 사항 및 시공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견본주택에 제시된 창호(유리, 프레임)의 강도는 본 공사 시 층수 및 위치에 따라 바람에 의한 영향의 차이로 인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형태, 재질 등이 달라질 수 있다.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근린생활 등 및 단지 등 외부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 주출입구의 문주 형태 및 외벽의 줄눈, 리브 등과 주차장 출입 경사로의 캐노피 설치여부 , 형태 등은 본 공사 시 시공성 및 구조적 안전성과 관련 인허가 사항을 고려하여 일부 미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다. • 견본주택(사이버 견본주택 포함)에 설치된 배치도, 평면도 및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본 공사 시 설치될 필요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으며 모형 및 홍보용 카탈로그에 표현된 내용(배치, 구획면적, 부대시설, 드라이에어리어(DA), 한전패드, 가스정압기,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레벨 등)은 변경될 수 있다. • 분양 홍보물 및 모형에 표현된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단지 외부 여건	기부 채납	• 인허가 조건에 따라 사업부지 내 일부는 차량 진출입 가감속차로(대류1류 5호선, 길이 약 133m, 폭 약 4~4.5m) 및 경관녹지(소로3류 A호선, 진입로 포함)로 사용 및 기부채납 되어 사업면적에서 제외한다. • 본 사업부지에 면하여 기부채납 되는 가감속 차로 및 경관녹지(진입로 포함)의 조성 및 모든 비용은 사업주체가 시행 및 부담하고 추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며, 그에 따른 비용은 분양계약금액에 포함된다. •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라 본 사업부지 내 공공을 위한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이 설치되며, 유지관리 의무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기부채납되는 가감속차로(보도 및 자전거도로 포함) 및 경관녹지(진입로 포함)는 소유 및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으로 임의로 물건을 적치 또는 점유 및 영업행위를 하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울타리, 담당, 출입구 폐쇄 등) 설치, 해당 부지에 설치된 시설물의 훼손, 임의 시설물 설치 등 해당 부지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기부채납 도로, 경관녹지 등 기반시설은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계획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다.
	도로	• 단지의 주변 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다. • 단지 서측에는 폭 약 35~40m의 (서문대로)도로(보차혼용)가 위치한다. • 단지 북측에는 폭 약 4~5m의 보행자전용도로(경관녹지 진입로)가 설치된다. • 단지 북측은 단지와 도로 또는 인접대지간 레벨차이로 인하여, 단지와 도로간 석축 또는 옹벽 등이 설치되어 단지 내 출입이 제한 또는 불가할 수 있다. • 단지 내 서측 도로는 차량 진출입 편의를 위한 가감속차로가 설치된다.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매연,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환경권 및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다. • 단지 서측 도로에 면하여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도로소음 저감을 위한 높이 약 11~12m의 방음벽이 단지의 지상1층 서측 외곽 전체(길이 약 115m)에 설치되며, 인접한 주동의 세대 및 저층부 세대(단지 내 서향을 조망 세대 포함)는 세대의 채광 및 조망간섭, 환기, 소음 및 공해, 빛공해 등의 제약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다. • 단지 남측의 구(舊) 대로 3-32호선(서문대로~봉선로간 도로)의 설치시 관련 법령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및 진동, 매연 등이 발생하여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다. • 단지 남측의 비상차로는 추후 구(舊) 대로 3-32호선(서문대로~봉선로간 도로)의 설치 시기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비용으로 구(舊) 대로 3-32호선과 연결하여야 한다. 단, 인허가청 등의 의견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도로 연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단지 내·외부의 차선 및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주차구획, 주차 진출입구, 자전거주차장 등은 공동(건축·경관·도시계획)위원회 및 관련기관 협의에 의한 결정사항이다. • 본 단지의 교통소음에 따른 소음기준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5층이하 실외 65dB(A) 미만, 6층이상 실외 65dB(A) 미만 또는 실내 45dB(A) 이하이며, 예상 층별 소음은 101동 5층 이하 35.9dB(A)~60.1dB(A) / 6층 이상 45.4dB(A)~60.3dB(A), 102동 5층이하 35.9dB(A)~61.2dB(A) / 6층 이상 49.1dB(A)~60.4dB(A), 104동 5층 이하 48.3dB(A)~55.5dB(A)/6층이상 40.6dB(A)~58.3dB(A), 106동 5층 이하 54.1dB(A)~~62.8dB(A)/6층 이상 50dB(A)~63.4dB(A)로 2층 이상의 층수에서 실외소음기준을 모두 만족한다.(서측 방음벽 설치 기준이며, 예상층별소음이기 때문에 실제 측정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교통소음기준평가 결과에 따라 방음벽의 길이 또는 높이 및 설치 개소 등이 증감할 수 있다.
	주변	• 단지 동측과 남동측에는 제석산이 위치하며, 이로 인한 해충, 소음, 냄새, 빛공해, 조망, 채광 등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다.

구 분		내 용
	현황	• 단지 서측에는 약 3~7층 이하 규모의 상가, 병의원, 사무실, 빌라 및 주택 등이 위치하며, 이로 인한 소음, 냄새, 빛공해, 채광 및 조망간섭, 교통체증 등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다. • 단지 남측에는 약 2층 이하 규모의 전자제품매장 및 식자재마트 등이 위치하며, 이로 인한 소음, 냄새, 빛공해, 채광 및 조망간섭, 교통체증 등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다. • 단지 북측과 남측에는 약 15~20층 이하 규모의 아파트 등이 위치하며, 이로 인한 소음, 냄새, 빛공해, 채광 및 조망간섭, 교통체증 등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다. • 단지 북측에는 대광여고와 서진여고가 위치하며, 이로 인한 소음, 냄새, 빛공해, 채광 및 조망간섭 등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다. • 단지 북측에는 서문대로와 면하여 공사 중지 된 서진병원 건물이 수년간 존치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채광 및 조망간섭, 미관저해와 안전사고 및 범죄 위험 등과 추후 철거 등에 따른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등에 따른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다. • 본 단지의 일조율 검토결과는 80% 이상으로 수인한도을 만족하나, 배치계획에 따라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일조율이 수인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대지 경계	• 단지 북측과 동측은 단지와 도로 및 인접대지간 레벨차이(약 20m)로 인하여 법면 또는 옹벽(약 5m 이상)이 설치되거나 주동 및 건축물이 접하여 시공된다. • 단지 남측은 단지와 인접대지간 레벨차이(약 5~10m)로 인하여 지하층 외벽이 노출되거나 법면 또는 옹벽이 설치된다. • 본 공사 시 본 단지와 주변도로 및 인접대지간의 레벨차이 또는 현장여건 등에 의하여 계단 및 경사로, 석축 및 옹벽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다.
	학교	• 인근학교 학생수용 및 학생배치와 관련하여 유치원생은 해당 취학권역 내 배치, 초등학생은 현재 통학구역 미설정 지역으로 추후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통학구역 조정 후 진월초등학교에 배치, 중학생은 원거리 배정 또는 학생배치시설 확충(분양계약금 내 포함) 후 제2학교군 배치, 고등학생은 단일학교군으로 배치가 가능하며,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학 배정학교, 시기 등 관련사항들은 "을"이 직접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르며 입주시점 교육행정기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전 관련사항들을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에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단지 내부 여건 Ⅰ	단지 배치	• 내부 도로 및 조경선, 조경공사, 건물외벽 마감공사 등을 포함한 단지 공사,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인·허가 과정이나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고,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 •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과 각종 평가(사전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한 내용 중 본 사업과 관련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 단지의 주택건설 사업계획(건축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 • 본 공동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단지 내 타용도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 단지 배치 상 동별, 향별, 층별, 호실별 차이 또는 계약체결 이후 주변의 신축, 재건축 및 증축 등의 경우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상이하거나 침해당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상이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휴게소, 광장,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 물놀이터, 단지 내 조경 등 시설물에 인접한 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시설물 및 이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각종 공해(소음, 진동, 빛, 악취, 해충 등) 발생 및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과 제연을 위한 시설물(DA, 배기구 등)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및 인접한 세대는 각종 공해(소음, 진동, 눈부심, 악취, 해충 등) 등에 의해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입주 시 단지 내 보차도 바닥 마감, 조경, 세대의 층수, 창호형태 및 크기, 평면 형태, 입면 장식, 돌출발코니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의 제원에 따라 운반 가능한 이삿짐의 크기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 준공 시 소음 측정으로 인해 도로에 면한 면 또는 일부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다. • 본 단지 서측에 단지 주출입구(지하2층) 1개소(보행자 및 차량 공용)가 설치되며, 단지 특성상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본 단지는 주변 지형 및 배치의 특성상 주변 도로변에서 단지내로 직접 진입이 불가하며, 지하2층 단지 주출입구를 통하여 지하주차장의 주동 출입구를 통해 각 동에 진입하거나, 지하주차장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단지내부로 진입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보행 이동 및 주차차량과의 간섭 등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구 분		내 용
		• 지하 주출입구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차량이동 등에 유의하여야 하며, 노약자 및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와 동행하시기 바라며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은 전적으로 보호자 및 당사자에게 있다. • 동 출입구(필로티 포함)(추가)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폭, 높이)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하다. • 단지 출입구 및 동 출입구 인근 세대와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시설물의 입주민 통행 및 사용, 단지 내 조명 등으로 인하여 소음, 진동, 눈부심, 악취, 해충 등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다. • 단지 서측 어린이놀이터옆에는 단지 주출입구 및 지하 주차장과 연결되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입주민의 통행 등으로 사생활권 및 조망권, 환경권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다. • 104동, 109동을 제외한 모든 동의 지상1층에는 일부 또는 전층 필로티가 설치된다. • 필로티는 해당 동의 출입구 및 공공의 통행로 및 자전거 보관소로 이용되며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 필로티 상부의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간섭 및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권 침해의 우려와 필로티 상부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 단지의 북서측에는 비상차량 진출입구가, 북측에는 비상차로가 설치되며 긴급 및 서비스(이삿짐, 소방차량, 쓰레기차량 등) 차량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 단지 내 지상의 도로(차도 및 보도)는 긴급 및 서비스(이삿짐, 소방차량, 쓰레기차량 등) 차량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다. • 단지 내 도로(보도 및 차도) 및 세대 전면 공간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비상시 소방차 정차 공간이 설치 및 표기될 수 있으며 임의로 위치 이동 및 제거, 물건적치 등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외관	•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번호는 향후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호수의 표기 또한 입주 시 변경될 수 있다. • 공동주택 측벽 등에 표기 또는 설치된 로고의 디자인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 관청의 도시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및 경관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현장여건,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다. • 외부 벽체에는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다. • 현장여건에 따라 마감재 두께 및 주동 저층부 외부 마감재(석재, 석재뿜칠 등) 적용 구간에 해당하는 세대의 창호사이즈는 다소 줄어들 수 있다. • 주동 입면에 설치되는 수평몰딩의 돌출부분에 부딪히는 빗소리 등에 의해 생활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다. • 본 공사 시 시공여건 고려 혹은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색상, 옥상장식물, 창틀 모양 및 색상 등 디자인, 지하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 문주, DA, 옹벽 등), 조경디자인(식재계획, 조경 바닥 디자인 등), 단지 사인 및 조명(단지 BI사인물 포함), 주차장 구조체 공법(DECK PLATE 등) 등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공법 등이 부위별로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일부 입주자의 개인 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다. • 단지 환경디자인 개선을 위해 주동 및 공용부 입면 일부 구간에 재료(유리 포함) 및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다. • 동 위치에 따라 일부 동은 빛의 반사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다. • 주동 동출입구 및 일부 저층부(필로티 외측 벽면 포함, 필로티 내측 벽면과 계단실, 공용홀 제외)는 석재마감이 적용되며, 동 일부 저층부, 지하주차장 외부 노출데크 벽면, 단지 외곽 옹벽, 단지내 단차 부위, DA 등 외부시설물,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부위는 석재뿜칠 및 일부 석재 혼합마감이 적용된다. • 주차장 비상차로 램프, 외벽 및 109동 좌/우측 외벽은 구조등 기타 사유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단지 내부 여건 Ⅱ	시설물	• 자전거 보관소는 각 동 지상1층에 필로티(내부)에 설치되며, 단 104동과 109동은 외부에 설치한다.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무인택배보관소는 동별 1개소(총 9개소) 설치하며 택배함 수량은 전체 세대수의 15%기준으로 설치된다. • 우편함은 각 동 지상 1층에 설치되며, 우편함의 위치, 디자인, 개소는 변경될 수 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101동~108동 배면 또는 주출입구 인근에 공용으로 8개소가 설치되며,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해 RFID수거함(최소 60세대 당 1대)을 설치하여야 한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 및 재활용품 보관소 이용에 관련하여 필요시 입주 후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간의 협의에 따라 사용 방법을 협의하여야 한다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 및 재활용품 보관소 인접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미관, 소음 및 진동, 냄새, 해충 등으로 인한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커뮤니티마당은 2개소(잔디광장, 부속정원)가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101, 103, 104동 사이 및 103, 104, 105, 109동 사이에 설치된다. • 커뮤니티마당과 인접한 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시설물 및 이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각종 공해(소음, 진동, 빛, 악취, 해충 등) 발생 및 사생활권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조경	• 조경시설물은 분양관련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의 이미지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구 분		내 용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이 단지 내 설치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으로 대체되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다. • 단지 내 조경 식재 부분과 인접한 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해충침입, 악취발생, 환기, 채광 및 조망 불량 등으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의 침해 및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단지 내 조경 및 수경시설 등의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 유지, 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단지 내 조경 및 수경시설, 조경수 등은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 또는 식재 여부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다.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다. • 단지 배치 및 설계상 일부 시각적 간섭 및 공용시설 조명에 의해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다. • 단지 내 옹벽,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등 구조물 구성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사생활권, 조망, 일조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 소방용 공기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아 해당구간의 저층세대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주차장	• 본 단지는 지하1층~지하2층에 주차장을 계획하고 용도별로 주차장을 분리하여 사용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원활한 교통통제 및 운영을 위하여 혼용하여 이용될 수 있으며, 주차장 출입구는 공동으로 운영된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부 지하주차장 사용구획 및 주차대수가 변경 될수 있다. • 본 단지 지하주차장의 면적은 각 용도별 계획주차대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으며, 타용도의 주차장 사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 공동주택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 337.59대의 126%인 427대(상가 주차 6대 제외)이며, 일반형, 확장형, 경차, 장애인, 전기차 주차가 혼재되어 있다. • 지하주차장에 계획된 창고는 주차장에 부속된 공용창고로 입주민 개개인의 창고로 사용할 수 없다. • 지하주차장의 평면 계획에 따라 주차대수의 배분은 주동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지하주차장 일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 등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 또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 지하주차장과 공용부 통로 공간 및 계단실, 외벽, 구조물 등은 비난방・비단열공간으로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 • 지하주차장의 유효높이 확보를 위하여 일부 기둥, 보와 같은 구조체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높이는 2.7m 이며, 지하2층 주차장 내부 차로 높이는 2.7m(주차공간 2.1m), 지하1층 주차장 내부 차로 높이는 2.3m(주차공간 2.1m) 시공됩니다. (설비 배관 설치 높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는 높이 2.7m 차량은 지하2층에만 진출입이 가능하며, 높이 2.3m 미만의 차량은 전 층 출입이 가능 하다. 단, 주차공간은 높이 2.3m 미만의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며, 일부구간은 건축물의 구조 및 기계, 전기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높이 2.1m 미만의 차량만 주차 가능하도록 천정고가 변경될 수 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주차램프에 인접한 저층세대 및 맞은편 세대는 차량불빛, 소음, 진동 등에 따른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다. • 각 주동별로 주차장 이용거리와 동선이 상이하여 불편이 따를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모형 및 도서를 통하여 동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다. • 전기차 충전설비는 관련 법정 규정에 의해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 될 수 있다. • 전기차 충전설비는 총 23대(지하1층에 급속 1대, 완속 9대, 지하2층에 이동식콘센트13대)가 설치된다.
단지 내부 여건 Ⅲ	부대 복리 시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부대복리시설)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시설이며, 용도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등에 따라 이용에 제한을 주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 • 본 단지 내 부대시설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생활폐기물보관시설, 자전거 보관대 등이 설치되고, 복리시설은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운동시설(휘트니스센터·골프연습장), 입주민 회의실이 설치되며, 일체의 운영 및 보안, 유지 관리는 입주민 자치적으로 하여야 한다. • 복리시설 중 경로당, 어린이집, 입주자회의실, 작은도서관, 운동시설(휘트니스센터·골프연습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등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위한 입주민공동시설로써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간 협의에 따라 타용도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이용에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운동시설(휘트니스센터·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다. •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운동시설(휘트니스센터·골프연습장), 입주민회의실, 작은도서관의 내부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에서 시공하며, 가구 및 가전, 소모집기 및 비품, 운동기구, 인테리어 마감 등은 별도 제공 또는 설치되지 않으므로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하며 당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집기, 비품 등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민들이 부담하며 당사에 별도의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다. • 사업주체에서 "분양관련 서비스지원품목(주민공동시설 내부시설물, 냉난방기기, 집기류)"을 별도로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거나 또는 관리사무소 선정 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 서비스 지원품목 일체가 인수인계되며 이에 대한 관리 및 유지, 보수책임은 인수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게 있으며, 이"분양관련 서비스 지원품목"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별도의 하자보수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다. • 경로당 및 어린이집은 109동 지하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세대별 및 동별 위치 및 용도에 따른 거리에 따라 접근동선이 불리하거나 불편할 수 있으며, 109동, 인접한 세대 및 저

구 분		내 용
		층부 세대는 미관,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 운동시설(휘트니스센터·골프연습장)은 101동 측 지하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세대별 및 동별 위치 및 용도에 따른 거리에 따라 접근동선이 불리하거나 불편할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미관,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주민회의실은 101동 측 지하2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세대별 및 동별 위치 및 용도에 따른 거리에 따라 접근동선이 불리하거나 불편할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미관,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 어린이 및 영유아 놀이터는 지상1층 101동 102동 사이에 물놀이터, 103~105동 사이에 유아놀이터, 105동~106동 사이에 어린이놀이터가 계획되어 있으며, 세대별 및 동별 위치 및 용도에 따른 거리에 따라 접근동선이 불리하거나 불편할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미관,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 입주 후 놀이터(어린이 및 영유아, 물놀이터 등)의 시설물 관리는 단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협회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수질관리 포함),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부대복리시설 및 기타 시설물의 설치로 인접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일조, 조망, 소음, 진동, 눈부심, 냄새, 해충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부대복리시설의 냉방 실외기, 환기시설 등은 해당시설 외부 설치 또는 외기를 향하여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시설물 및 이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각종 공해(소음, 진동, 빛, 악취, 해충 등) 발생 및 사생활권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는 입주 후에도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한 공간으로 일정기간 운영한 뒤 향후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변경할 계획이며, 그로 인해 일정기간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을 제공하며, 지층의 특성상 전자기기, 목재류 등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습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설치에 유의하여야 한다.
	근린 생활 시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외관 및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단지 특성상 근린생활시설 입점자 및 사용자가 단지 및 공용부에 접근 내지 사용이 가능하다. • 근린생활시설은 102동 하부 지하1~2층에 서측 도로에 면하여 설치되며, 시설 이용자 및 입점업종에 따른 조명, 소음, 진동, 냄새, 해충 등으로 인하여 인접한 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다.
	공용 설비 /시스템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가스정압기는 북서쪽 101동 배면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크기는 최소 4mx3m이다. 설치 위치는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다.(공급업체((주)해양에너지)와 협의에 따라 설치기준, 사양 등이 변경될수 있음) • 가스배관은 건물 외부에 설치되며, 설치 계획에 따라 내부에 설치될 수 있다. • 지붕, 옥탑층 및 측벽에는 의장용 구조물, 태양광 구조물,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피뢰침 및 시행자 또는 시공사 BI 사인물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 또는 최상층 세대는 소음, 눈부심, 환경적 영향 및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비용은 전체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지하 및 지상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제연실 포함) 및 정화조, 제연 및 환기용 DA탑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인접세대의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야간조명, 홈네트워킹 등 단지 내 공용설비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하며, 입주 후 관리 규약에 따른다. • 본 단지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전기실, 기계실, 방재실, MDF실의 건축물 구획은 해당 실별로 1개소로 통합 구성한다. • 본 단지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중앙감시장비 (홈네트워크, 원격검침, 주차관제, 비상벨, CCTV, HEAD END, 태양광발전, 전기차 충전설비, 승강기 감시반등)는 지하2층 방재실에 각 시스템별로 통합 구성한다. • 각 동의 계단실의 형태는 전용면적이 동일하더라도 동 형태에 따라 설비PD,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의 형태 및 면적이 서로 다를 수 있다. • 각 동별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해당 동에 따라 각각 다르고, 외부에 면하는 일부 창에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수동으로 개폐 시 사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 엘리베이터는 코어별 층당 1대씩 계획되어 있다. • 엘리베이터 운행시 인접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모형 및 도서를 통하여 엘리베이터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각 세대의 전실 및 홀, 복도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물건을 적치하거나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기설비 설치위치: 소출력 FM/TDMB 중계기(지하용)이 지하 1,2층에 설치됩니다

구 분		내 용
단위세대 I	일반사항	• 동, 호수에 따라 카달로그 또는 견본주택과 달리 본 시공 시 배치 및 동별 호실 위치에 따라 평면이 좌우 대칭되어 시공될 수 있다. • 타입별, 동호수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각 평형별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확장 시 제공 품목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추가선택품목 사항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한다. • 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검사기준은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사항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및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 단위세대 실외기실, 발코니의 경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여도 비난방, 비단열 공간이며 별도의 천장마감이 없다. (단, 84A, 84B, 84C, 126 타입의 주방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를 설치함) • 단위세대 실내 천정 높이는 기본 2,300mm, 우물천정 구간은 2,400mm이며, 실외기실, 다용도실, 발코니, 욕실 등의 천장 높이는 상이하다. • 단위세대 내 우물천장 형태, 커튼박스의 위치, 크기, 높이 및 형태는 천장내부의 설비 및 배관 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다. • 단위세대 안목치수 산정 시 기본형평면을 적용하며, 옵션마감재, 벽체, 걸레받이, 천장몰딩 등은 제외하여 산정한다. 본 공사 시 벽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안목치수 및 내부공간 면적이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다. • 이웃세대(상하좌우)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바닥, 천장, 벽체 등이 변경되거나 돌출될 수 있다. • 상부세대 욕실배관이 하부세대 욕실 천장 속에 설치되며, 상부세대 욕실배관 보수 시 하부세대는 협조하여야 한다. •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욕실문 개폐 시 신발걸림은 하자사유가 될 수 없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등에 따라 본 공사 시 설치되는 등기구의 위치 및 콘센트, 스위치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다. • 각 평형별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추가선택품목 사항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한다.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셔야 하며, 특히 입주 후 첫해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욕실 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욕실 환기를 하셔야 하며, 욕실 환기 미비, 거실, 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발코니)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환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 단열공사 외 환기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는 시공 상의 하자가 아니며, 사업주체는 그에 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계약자는 세대 각 실 및 발코니 외부 창호에 설치된 난간대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전입, 전출, 이사 시 이삿짐 장비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이삿짐 등은 해당 동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이사 중 파손시 원상복구), 불가피하게 난간대 설치 구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필히 난간대에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창호	• 침실과 욕실문에 손끼임 방지장치가 제공되며, 제품사양은 변경될 수 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철재문 및 방화문류의 설치 위치, 크기, 형태, 개폐방향 디테일은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다. • 공동주택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실별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 및 유리의 제조사는 시공자의 하도급 입찰 결과에 따라 선정하며, 본 공사 시 동급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제조사, 유리 및 손잡이의 형태, 열림 방향, 색상 등은 본 공사 시 동급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 • 세대 외부 창호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투시형 철재난간이 설치되어 시야 간섭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색상, 제조사, 재질, 형태 등은 본 공사 시 동급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크기, 재질, 색상, 손잡이 개폐방식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다. • 실외기실 그릴창 프레임 및 날개 등은 금속성 재질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므로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가 아니며 입주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갑"에게 별도의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다.
	가구 / 마감	• 계약자는 계약 시 추가선택품목(가구, 가전, 평면선택 등)을 반드시 사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한다. • 세대 내부의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욕조, 욕실거울 등이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측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의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는다. • 본 공사 시 원자재 수급 및 자재의 특성에 따라 세대 내 설치되는 마감자재(석재, 타일, 도배지, 시트, 마루 등)의 색상 및 패턴이 균질하지 않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상이 할 수 있다. • 액세서리 등의 하드웨어 사양은 동급 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다.

구 분		내 용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다.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한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생산일자, 생산공장(지)에 따라 이색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본 공사 시 발코니, 화장실(샤워부스 포함), 현관 등의 단차 및 타일 줄눈의 모양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의 마감은 설치 후 시간경과에 따라 노후화가 발생되며, 자외선 및 각종 세제, 화학약품 등에 의해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 세대 내 설치하는 가구는 자체 제작으로 본 공사 시 시공여건 및 미관개선, 사용자의 편의 등의 사유로 세대 내에 설치되는 가구의 수납 계획 및 사이즈, 마감자재(수전, 액세서리류 등)의 설치 위치 등이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되거나 변경 될 수 있다. • 분양계약자는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빌트인 가전제품을 제외한 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 에어컨 실외기 등 일체)은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계약 및 입주 시 견본주택 또는 설계도서를 통해 반드시 실제 크기를 확인 하여야 한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의 깊이가 다를 수 있으며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 관련 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상부 덕트의 크기는 변경될 수 있다. • 가스미터기 설치 위치에 따라서 선반 크기가 변경될 수 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 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다. • 세대 내 천장의 올림공간(우물천정)의 천정고는 천장 내부의 해당 세대 및 상부층 세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본 공사 시 다소 축소 또는 확대 되어 시공 되어질 수 있다.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해당 세대 및 상부층 세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다소 축소 또는 확대 되어 시공 되어질 수 있다. • 최상층 세대에는 수납공간 부분에 다락 계단이 설치 되어, 수납공간이 축소되거나 디테일 및 마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 실외기실	• 각 세대별 발코니로 인한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단지는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른 추가 단열공사 시 비확장 세대 측에 우선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며, 이로 인하여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및 실내 공간 등 일부 구간의 바닥, 벽체, 천장 일부가 돌출, 단차, 높이 및 폭 축소,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내부 공간 축소 등 사용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며,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에는 투시형 난간 또는 발코니전용 단창이 설치된다. • 발코니 세탁실의 경우 일반적인 사이즈의 세탁기 단독 설치로만 설계되어 있으며, 추후 건조기 설치 시 수전 높이, 가스계량기, 보일러, 전열교환기 등의 간섭으로 이동 및 설치가 불가하거나 창문 사용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발코니 폭이 협소한 일부 세대의 경우 대용량 세탁기 설치가 불가 할 수 있다. • 공동주택 발코니 내 세탁기 설치 등으로 인한 단차 발생구간은 낙상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 발코니에는 결로방지를 위한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겨울철 수도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발코니(실외기실, 세탁실 포함)에는 보일러, 전열교환기 등이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 등에 전열교환기 덕트, 스프링클러 배관, 드렌쳐설비 등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임의로 철거 또는 변경이 불가하다. • 발코니(실외기실, 세탁실 포함)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현장 여건상 위치와 수량이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 되었으며, 물 사용시 배수가 불가하거나, 하부층으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주방 발코니(세탁실)의 경우 세탁수전 및 청소용 수전이 설치된다. 단 115타입의 경우 다용도실 내 세탁수전이 설치된다. •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시스템에어컨 또는 환기시스템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마감 (창호, 그릴, 전등 등)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다. • 에어컨 실외기 사이즈에 따라 실외기실 내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외부에 별도 설치가 불가하니 구매 전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세대 내 에어컨 작동 시 실외기실 그릴창의 방충망을 닫고 사용 하는 경우에는, 냉방 성능이 저하 될 수 있다. • 세대 내 에어컨 작동 시 실외기실 그릴창의 그릴을 개방하여 사용해야 하며, 폐쇄한 상태로 작동 시 냉방성능 저하, 고장 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신중하게 관

구 분		내 용
		리하여야 한다. •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에 보일러와 수전 및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창문 또는 그릴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는 신중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화재 등 유사시 하부세대로 대피를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115타입 제외)되며, 이에 따라 실외기실 및 발코니 공간의 사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다. • 피난구 상부 덮개로 인한 소음 및 방범에 유의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장물의 적치, 임의변경 등 피난활동에 제약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위반 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 하향식 피난구는 층별로 교차되어 시공되며, 피난구 커버에는 별도의 마감이 시공되지 않아 발코니 바닥 및 천정에 제품의 마감면이 돌출 및 노출될 수 있다. •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 시 대피를 위한 시설로 덮개를 열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으며, 하향식 피난구 덮개를 밟거나 덮개 위로 물이 넘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109동(115타입) 지상3~4층의 침실1(안방)의 발코니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완강기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설치공간의 사용상 제약 및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 필로티 상부 층 단위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대피를 위해 완강기가 설치 되며, 해당세대 실외기실 창호는 외부로 열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된다. 단 관할소방서 협의에 따라 설치위치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다. (109동 115타입 제외) • 세대 내 완강기가 설치되는 부분의 하부에는 피난을 위한 발판(벽부 고정형 접이식 발판 또는 발판 겸용 완강기함)이 설치 또는 비치될 수 있으며, 향후 입주 후 개별적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 세대 내 완강기는 층별로 교차되어 시공된다.
단위 세대 Ⅱ	다락	• 최상층 세대에는 다락이 설치되며, 일부 타입의 경우 기준층의 팬트리 위치에 다락 통행을 위한 고정형 계단이 설치되어 다른 세대와 대비하여 수납공간이 부족할 수 있다. • 최상층 세대의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 시 유상옵션 구성 및 마감 적용 부위 등이 기준층과 상이하므로, 견본주택의 평면자료 및 카탈로그 등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일부 최상층 세대는 다락 통행을 위한 고정형 계단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천장이 돌출되거나, 낮아질 수 있다. • 다락 계단의 폭이 협소하고 단높이가 높아 계단 이용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 다락의 특성상 천장고가 낮고 경사지붕으로 인하여 보행 및 이용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옥외 공간	• 다락 또는 하부층과의 바닥면적차이 등으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에 형성되는 외부공간(이하 옥상 외부공간)은 공용공간으로써 계약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공간이나, 입주 후 구조상 해당 외부공간이 면한 해당 층 세대가 출입 및 사용할 수 있으며, 본 청약의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른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옥상 외부공간 해당 층 세대 입주자는 해당 외부공간을 내부공간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유지관리를 위하여 세대를 통하여 관리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입주 후 옥상 외부공간의 누수 발생시 공용공간으로 관리규약에 따라 보수를 하여야 하나, 옥상 외부공간 해당 층 세대의 시설물 임의 설치, 개보수 등으로 인한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보수 및 하자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세대의 비용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옥상 외부공간은 본 공사 시 건축평면 및 입면형태에 따라 해당 외부공간의 형태가 변경되거나 바닥의 단차, 난간, 배수처리 방법은 본 공사 시 조정될 수 있다. • 옥상 외부공간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다. • 옥상 외부공간의 외부 마감재 설치 유무에 따라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어 해당 옥상 외부공간의 면적이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다. • 옥상 외부공간에는 동파발생 등에 따라 별도 수전을 설치하지 않으며, 입주 후 임의로 수전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하자보수는 입주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 옥상 외부공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빗물이나 생활용수에 의하여 하부세대에 일부 선홈통 설치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 옥상 외부공간은 외측에 직접 노출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으며, 그에 따른 안전을 위하여 철재 난간을 설치하나 통풍 및 시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자의 부주의로 인한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 후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전기 / 기계 설비	• 본 공동주택은 개별난방임. • 본 공사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다. • 단위세대 내 기본 냉매배관 2개소(거실, 안방)가 설치됨. 단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시 기본 매립 냉매배관(거실, 안방)은 시공되지 않는다. • 공동주택 주방 및 욕실 내 배기는 직접배기방식으로 설치되며, 그로인해 외부 입면에 후드캡이 설치되며, 일부 발코니 및 실외기실 등에 덕트가 노출될 수 있다.또한 설치위치에 따라 인접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다락(최상층 단위세대)에 냉난방설비(바닥난방, 냉매배관 등)가 설치되지 않는다. • 단위실별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창호 및 외기노출벽면 마감재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전기기구(홈네트워크, 조명기구, 조명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등) 설치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다. • 세대 내 전기분전반/통신단자함의 설치 위치 및 높이는 변경될 수 있다. • 세대 내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 시 적정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상하여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된 식탁 위치를 기준으로 설치하였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확인하여야 하며,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다. • 욕실 내 샤워부스바닥과 욕조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는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 및 사양, 크기는 변경될 수 있다. •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다. • 단위세대의 환기시스템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전열교환장치 또는 동등이상의 사양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된다.

■동별 설계상 주요 유의사항

구 분	공 지 내 용
101동	• 101동 남측에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접 동은 차량통과 등에 의한 진동, 소음 등의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될 수 있다. • 101동 서측에 설치되는 방음벽으로 저층세대는 조망, 환기, 채광이 제한될 수 있다. • 101동 북측 비상차로의 차량 통과로 인해 인접 동은 진동, 소음 등의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 101동 북측 비상차로의 옹벽으로 일부세대는 조망, 환기, 채광이 제한될 수 있다. • 101동 남측에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므로 진동, 소음 등의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될 수 있다. • 101동 동측에 잔디광장이 설치되므로 진동, 소음 등의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될 수 있다. • 운동시설(휘트니스센터·골프연습장)은 101동 측 지하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한 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미관,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주민회의실은 101동 측 지하2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한 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미관,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102동	• 102동 북측에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접 동은 차량통과 등에 의한 진동, 소음 등의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될 수 있다. • 102동 서측에 설치되는 방음벽으로 저층세대는 조망, 환기, 채광이 제한될 수 있다. • 102동 북측에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므로 진동, 소음 등의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될 수 있다. • 102동 일부 저층세대는 단지 보행로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진동, 소음, 채광, 조망 등의 침해가 발생될 수 있다. • 근린생활시설은 102동 하부 지하1~2층에 서측 도로에 면하여 설치되며, 시설 이용자 및 입점업종에 따른 조명, 소음, 진동, 냄새, 해충 등으로 인하여 인접한 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다.
103동	• 103동 북측, 동측 비상차로의 차량 통과로 인해 인접 동은 진동, 소음 등의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 103동 북측, 동측 비상차로의 옹벽으로 일부세대는 조망, 환기, 채광이 제한될 수 있다. • 103동 북서측에 잔디광장이 설치되므로 진동, 소음 등의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될 수 있다. • 103동 남측에 유아놀이터가 설치되므로 진동, 소음 등의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될 수 있다. • 103동 일부 저층세대는 단지 보행로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진동, 소음, 채광, 조망 등의 침해가 발생될 수 있다.
104동	• 104동 서측에 어린이 놀이터, 북측에 잔디광장, 동측에 유아놀이터가 설치되므로 진동, 소음 등의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될 수 있다. • 104동 저층세대는 단지 보행로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진동, 소음, 채광, 조망 등의 침해가 발생될 수 있다.
105동	• 105동 남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므로 진동, 소음 등의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될 수 있다. • 105동 북측에 유아놀이터가 설치되므로 진동, 소음 등의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될 수 있다. • 105동 동측(109동)에 어린이집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진동, 소음 등의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106동	• 106동 북측에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므로 진동, 소음 등의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될 수 있다. • 추후 남측도로 개설 계획에 따라 진동, 소음, 조망 등의 환경권과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다.
107동	• 추후 남측도로 개설 계획에 따라 진동, 소음, 조망 등의 환경권과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다. • 107동 동측에는 고저차로 인한 옹벽이 설치되며, 남측은 법면처리 되므로 입주자 및 관리주체는 낙상, 낙하물 또는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108동	• 108동 주방/식당 발코니에는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타 동에 비해 단열, 결로에 취약할 수 있다. • 추후 남측도로 개설 계획에 따라 진동, 소음, 조망 등의 환경권과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다. • 108동 동측에는 고저차로 인한 옹벽이 설치되며, 남측은 법면처리 되므로 입주자 및 관리주체는 낙상, 낙하물 또는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109동	• 109동 서측에 유아놀이터가 설치되므로 진동, 소음 등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다. • 109동 동측 배면은 제석산 절개부와 맞닿아 있어 채광창, 환기창 등의 설치가 불가하여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결로 및 누수에 취약할 수 있다. • 109동은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므로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일조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경로당 및 어린이집은 109동 지하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한 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미관,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 소음 평가 결과(기준) (준공 후 실측 소음도와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평과기관	교통소음원(도로) 현황	평과결과
주식회사 비앤이소음컨설팅연구소	서문대로	5층 이하 실외소음도(65dB(A) 미만) 6층 이상 실내소음도(45dB(A) 미만)

※ 단지 내 101동~104동 동측 방음벽 설치 예정 (1구간: L=236m,H=10m)
※ 이중창(22mm 복층유리 + 22mm 복층유리)구조 예정

• 방음대책(방음벽) 후 실외소음도

구분				5층 이하 실외소음도			6층 이상 실외소음도		
				1층	5층	평가	최고층	소음도	평가
101동	1라인	1지점	주간	43.4	47.2	기준이내	15	60.3	기준이내
			야간	39.4	43.1	기준이내	14	56.2	기준이내
		2지점	주간	39.3	45.6	기준이내	15	50.9	기준이내
			야간	35.2	41.6	기준이내	15	46.9	기준이내
	2라인	1지점	주간	41.2	44.8	기준이내	15	58.3	기준이내
			야간	37.2	40.9	기준이내	15	54.2	기준이내
		2지점	주간	50.7	55.1	기준이내	15	57.3	기준이내
			야간	46.7	51.0	기준이내	15	53.3	기준이내
	3라인	1지점	주간	47.8	60.1	기준이내	8	71.5	기준초과

			야간	43.8	56.1	기준이내	8	67.7	기준초과
		2지점	주간	38.8	45.5	기준이내	8	50.5	기준이내
			야간	34.7	41.5	기준이내	8	46.5	기준이내
	4라인	1지점	주간	48.4	58.4	기준이내	9	71.3	기준초과
			야간	44.4	54.4	기준이내	9	67.3	기준이내
		2지점	주간	38.2	40.1	기준이내	15	49.6	기준이내
			야간	34.2	36.0	기준이내	15	45.5	기준이내
102동	1라인	1지점	주간	61.6	64.3	기준이내	8	64.6	기준이내
			야간	57.5	60.3	기준이내	9	60.6	기준이내
		2지점	주간	46.8	49.8	기준이내	15	61.0	기준이내
			야간	42.8	45.7	기준이내	15	57.0	기준이내
	2라인	1지점	주간	57.9	58.9	기준이내	14	60.3	기준이내
			야간	53.8	54.8	기준이내	14	56.2	기준이내
		2지점	주간	41.7	45.4	기준이내	15	57.7	기준이내
			야간	37.5	41.4	기준이내	15	53.6	기준이내
	3라인	1지점	주간	48.3	60.9	기준이내	8	71.7	기준초과
			야간	44.3	56.9	기준이내	8	67.7	기준초과
		2지점	주간	40.1	43.2	기준이내	15	53.2	기준이내
			야간	36.1	39.2	기준이내	15	49.2	기준이내
	4라인	1지점	주간	49.2	63.3	기준이내	8	71.7	기준초과
			야간	45.2	59.3	기준이내	8	67.7	기준초과
		2지점	주간	54.1	56.3	기준이내	14	58.1	기준이내
			야간	50.0	52.3	기준이내	14	54.1	기준이내
106동	1라인	1지점	주간	60.7	61.6	기준이내	10	62.9	기준이내
			야간	56.7	57.6	기준이내	10	589	기준이내
		2지점	주간	50.3	53.0	기준이내	10	54.8	기준이내
			야간	46.3	49.0	기준이내	10	50.7	기준이내
	2라인	1지점	주간	61.8	62.9	기준이내	10	63.6	기준이내
			야간	57.8	58.9	기준이내	10	59.6	기준이내
		2지점	주간	58.4	62.0	기준이내	7	62.5	기준이내
			야간	54.4	57.9	기준이내	8	58.5	기준이내
108동	1라인	1지점	주간	27.9	28.9	기준이내	14	33.9	기준이내
			야간	23.9	24.9	기준이내	14	29.9	기준이내
		2지점	주간	38.8	41.6	기준이내	13	48.0	기준이내
			야간	34.8	37.6	기준이내	13	44.0	기준이내
	2라인	1지점	주간	57.4	58.4	기준이내	15	61.0	기준이내
			야간	53.4	54.3	기준이내	18	57.0	기준이내
		2지점	주간	25.9	26.8	기준이내	18	38.2	기준이내
			야간	21.9	22.8	기준이내	18	34.1	기준이내

• 방음대책(이중창) 후 실내소음도

구분			6층 이상 실내소음도			
			최고층	위치	소음도	평가
101동	3라인	주간	9F	침실2,3	42.8	기준이내
		야간	9F	침실2,3	39.0	기준이내
	4라인	주간	9F	침실2,3	42.5	기준이내
		야간	9F	침실2,3	38.7	기준이내
102동	3라인	주간	9F	침실2,3	42.9	기준이내
		야간	9F	침실2,3	39.1	기준이내
	4라인	주간	9F	침실2,3	42.78	기준이내
		야간	9F	침실2,3	39.0	기준이내

■ 일조 영향 평가 [평가업체 : ㈜친환경계획그룹 청연]

동	세대수	총일조4시간 이상확보세대수 (08:00~16:00)	연속일조2시간 이상확보세대수	수인한도		비고
				만족세대수	만족비율(%)	
101	56	47	47	47	83.93%	
102	59	59	59	59	100.00%	
103	29	16	16	16	57.14%	
104	40	37	37	37	92.50%	
105	22	20	20	20	83.33%	
106	18	21	21	21	100.00%	
107	38	35	35	35	100.00%	
108	30	29	29	29	100.00%	
109	8	0	0	0	0.00%	
총세대수	300	264	264	264	88.00%	
세대수 평균 확보비율		88.00%				

• 준공 후 실제 일조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 전 일조 불만족 동,호수 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기타 안내사항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 01222025-101-0000200 호	₩61,200,300,000 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 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회사명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현종합기술	화성엔지니어링	청인이엔지
감리금액	1,998,260,000	576,883,000	52,800,000	52,8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공동사업주체 및 시공사
상호	진월동지역주택조합	에스지씨이앤씨 주식회사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689-6, 2층(진월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3~6층 , 13층 (송암빌딩)
법인등록번호	407-08-65583	110111-0327555

■ 견본주택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735, 3층
■ 홈페이지 안내 : https://진월-더리브라포레.kr
■ 분양문의 : 1666-0500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본 공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 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